

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군



2022년 11월 1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6 호

군포도시공사 제규정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제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규정의 분류)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록물·총무
5. 보수·후생
6. 재무회계
7. 윤리·법규
8. 안전·보건
9. 고객관리
10. 내부운영관리
11. 개발사업관리

제6조(개정형식 등) 제2항제4호 중 “국어의 로마자표시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으로 한다.

제7조(입안)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1, 별표2”로 한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심의) 제2항제4호 중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를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및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미 래 기 획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
	직 위 성 명	청 럽 감 사 팀 장 이 영 남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의 화 (3 8 0 - 5 8 1 6)

[별표 1]

규정안 작성요령(제7조관련)

1. 제정의 경우

○○○규정안

<규정내용 기재>

2. 전부개정 의 경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규정

<규정내용 기재>

3. 일부 개정 의 경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 개정내용 기재>

4. 폐지의 경우

○○○규정 폐지규정안

○○○규정을 폐지한다.

개정내용 작성요령(제7조관련)

- 개정·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위치를 명확히 지정
-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함께 인용
-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1. 규정명 개정

- 규정명 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_____”을 “_____”으로 한다.
-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1] 제명 “_____”을 “_____”으로 한다.
[예2]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문의 제목개정

-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 제목 전부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____)”을 “(____)”으로 한다.
 -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_____”을 “_____”으로 한다.

3. 조·항·호를 일부개정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 개정할 부분이 하나인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_____”을 “_____”로 한다.
 - 개정할 부분이 둘 이상인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_____”을 “_____”로, “_____”을 “_____”로 한다.

[예] 제○조 본문 중 “____”을 “____”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____”을 “____”로 한다.

- 항·호를 달리하여 개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예] 제○조제A항 중 “____”을 “____”로 하고, 같은 조 제B항 중 “____”을 “____”로 한다.

- 조(항)에 각 호가 있는 경우 각 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예] 제○조(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____”을 “____”로 한다.

-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____” 다음에(또는 앞에) “____”을 삽입한다.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 중 “____” 다음에 “____”을 삽입한다.

- 기존의 조·항·호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호(제○항제○호) 중 “____”를 삭제한다.

4. 조·항·호를 전부개정하는 요령

- 조의 경우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_____

- 항의 경우

-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_____

- 호의 경우

- 제○조제○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_____

※ 전부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항 중 제3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항·호를 신설하는 요령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_____

-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_____

-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_____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신설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
- 조·항·호를 끌어올리거나 내림에 있어서는 이동되는 조·항·호를 제일 앞의 조문이나(올리는 경우) 제일 끝의 조문부터(내리는 경우) 이동하도록 한다.
-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조·호(제○조의2, 제○호의2)를 사용
-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함

-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제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10조를 추가할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_____

제10조 _____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_____

제11조 _____

- 기존의 항(호)을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조 중 제3항(호)을 제5항(호)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____(호의 경우 : 3. ____)

④____(호의 경우 : 4. ____)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1]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____

제○조의3 ____

[예2]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____ (호의 경우 : 1. ____)

6. 조 · 항 · 호의 복합적으로 개정하는 경우

-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____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____

제2조의3 ____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 제3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____”를 “____”로 한다.

-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 제5조 중 “____”을 “____”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 2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1항 중 “____”을 “____”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____”을 “____”로 한다.

②____

- 3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1항 중 “____”을 “____”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____”을 “____”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_____

제○조제3항 중 “____”을 “____”로 하여 이를(또는 동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_____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_____

4. _____

- 어느 조·항의 각호를 전부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_____

2. _____

3. _____

- 조·항 중 어느 항(호)을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을 한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예1]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예2]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부터 제5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7. 조 · 항 ·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

[예]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_____

[예]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_____

8. 조 · 항 · 호 또는 단서 등을 삭제

[예] 제○조(제○항 또는 제○호)를 삭제한다.

[예]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삭제된 조가 있는 경우(제5조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

[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9. 장 · 절 등이 관련 개정

○ 장 ·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 장 · 절 등의 제목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_____”로 한다.

- 장(절)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_____”을 “_____”로 한다.

○ 장 ·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장 ○○○

제○조 _____

·

·

제○조 _____

○ 장 · 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요령

제6장(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

제50조 _____

·

·

제58조 _____

10. 별표의 개정요령

○ 별표 일부개정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를 예로 함>

[별표 1]

제 목	기 호	내 용
체육시설관리	100	○○○○ 사용허가·관리사항
○○○○관리	200	○○○○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300	○○○○에 관한 사항
○○○○관리	400	○○○○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관리의 전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시설관리	_____	_____
--------	-------	-------

- 체육시설관리란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별표 1의 체육시설관리란 중 “_____”을 “_____”로 한다.

- 체육시설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추가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 다음에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용 료	_____	_____
-------	-------	-------

- 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할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관리란을 삭제한다.

○ 별표 전부개정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를 전부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조 관련)

[별표 2]

○○○(제○조 관련)

○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조 관련)

11. 부칙

○ 부칙 작성 방법

부 칙

[예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예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_____”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이 하나일 경우 조는 표시하지 않음

※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조(○○○)①_____	제○조(○○○)①_____
②_____	
<신 설>	제○조(○○○) 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조(○○○) _____	<삭 제>

[주] 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작성

규정안 작성서식

제 목

1. 제정(개정)이유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내용

가. 000 반영 또는 변경 또는 삽입. (안 ∨ 제 ○ 조)

1) ----

2) ----

나. (현행)을 (개정안)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 ∨ 제 ○ 조)

다. (도입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하도록 함. (안 ∨ 제 ○ 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또는 「0법」 제0조 또는 「0법」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또는 0년 예산 0원 반영)

다. 합 의: 별도 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개정 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정의 분류) 1. ~ 3. (생략) 4. <u>보수·후생</u> 5. <u>재무회계</u> 6. <u>업무관리</u> 7. <u>개발사업</u> 8. ~ 11. (신설)	제4조(규정의 분류) 1. ~ 3. (현행과 같음) 4. <u>기록물·총무</u> 5. <u>보수·후생</u> 6. <u>재무회계</u> 7. <u>윤리·법규</u> 8. <u>안전·보건</u> 9. <u>고객관리</u> 10. <u>내부운영관리</u> 11. <u>개발사업관리</u>
제6조(개정형식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표시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0-8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6조(개정형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u>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u> <u>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u> <u>어 표기법에</u> ----- ----- ----- -----.
제7조(개정형식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입안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제7조(개정형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표1</u> ”, “ <u>별표2</u> ”의 ----- -----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 -----.
제8조(심의) ① (생략) ② (생략) 1. ~ 3. (생략) 4. <u>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u>	제8조(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및 협의를</u> <u>진행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u> <u>제외한다.</u>